

공 고 문

사립학교법 제31조 제1항과 동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2015회계연도의 결산을
공고합니다.

2016. 05. 26

학교법인 원광학원 이사장 신 순 철

원 광 대 학 교 총 장 김 도 종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원광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광대학교의 2016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원광대학교의 2016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있으면 나열 또는 별첨함)

2016년 5 월 일

학교법인 원광학원

감 사 이 상

감 사 김 병

감 사 임 성 웅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3497호)

피감사자 (임회인)

직명 원광대학교 총장

성명 김 도 중 (인)

(사학기관 감사업무 처리유의사항 별지 제1의2호 서식)

원광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회계연도 : 2015년 3월1일부터 2016년 2 월 29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교비회계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해당사항 없음 (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	
피감사기관장 <u>원광대학교 총장 김도종 직인 (자인)</u>	

(교비회계 · 부속병원회계)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원광학원
이사회 귀중

우리는 별첨된 학교법인 원광학원과 원광대학교 및 원광보건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합산 재무제표는 2016년 02월 29일과 2015년 02월 28일 현재의 합산대차대조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학년도의 합산 운영계산서 및 합산자금계산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별첨된 원광대학교병원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6년 02월 29일과 2015년 0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학년도의 손익계산서, 자금계산서 및 기본금변동계산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별첨된 학교법인 원광학원 수익사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6년 02월 29일과 2015년 0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학년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자금계산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6년 02월 29일과 2015년 0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학년도의 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회계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

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원광학원과 원광대학교 및 원광보건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의 합산재무제표는 학교법인 원광학원과 원광대학교 및 원광보건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의 2016년 02월 29일과 2015년 0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학년도의 운영성과 및 자금수지 내용을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의견으로는 원광대학교병원의 재무제표는 원광대학교병원의 2016년 02월 29일과 2015년 0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학년도의 경영성과 및 자금수지 내용 그리고 기본금 변동 내용을 의료기관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의견으로는 원광학원 수익사업의 재무제표는 원광학원 수익사업의 2016년 02월 29일과 2015년 0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학년도의 운영성과 및 현금흐름 내용을 일반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

학교법인 원광학원과 원광대학교 및 원광보건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원광대학교병원, 원광학원 수익사업의 2015년 02월 28일로 종료되는 재무제표는 종전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2016년 05월 04일

열린공인회계사 감사반(제132호)

공인회계사 이 연 상 (인)

공인회계사 김 영 삼 (인)

공인회계사 염 동 현 (인)

본 외부감사인인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6년 05월 04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학교법인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